



사외이사 처우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「사외이사 처우규정」(이하 “**본 규정**”)은 SK가스 주식회사(이하 “**회사**”)의 사외이사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처우의 원칙)

- ① 사외이사에 대한 처우는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에게 현금이나 주식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,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, 특전, 기타 보수 이외의 혜택(이하 총칭하여 “**비급여 혜택**”)은 최소화하여야 한다.

제3조 (보수)

- ①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현금 및/또는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장에 대하여 보수 등 처우를 다른 사외이사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)

- ① 회사는 사내 보안정책을 유지하고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 1.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참석 목적의 교통수단(차량 및 지원인력) 또는 교통비
 2.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참석 목적의 숙박비
 3. 이사회 또는 위원회 등 업무 목적 회의, 워크숍 개최 시 발생하는 회의비(식비, 간식비 포함)

4.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
5. 기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 -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하고, 이러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나 개인적 용도의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 - ③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비급여 혜택을 사외이사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회사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절, 퇴임, 창립기념, 생일, 신년·연말 및 각종 행사 관련 기념품 내지 선물 등 비급여 혜택을 사외이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.
 - ④ 해외에 거주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보고)

- ① 회사는 제3조 내지 제4조에 의하여 제공된 지원 내역을 1년 단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보고는 이사회 운영비용에 관한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 평가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감안하여야 한다.

제6조 (기타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또는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25.3.20.)

본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